#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예지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084

발의연월일: 2024. 8. 22.

발 의 자:김예지·백종헌·최수진

엄태영 · 조정훈 · 박덕흠

송석준 · 서천호 · 강대식

김선교 의원(10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의료기관을 통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사회문제화 되고 있음. 현행법에 따르면 약사는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의약품정보를 미리 확인하여야 하며, 의약품정보 확인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(이하"정보시스템"이라 함)을 구축・운영할 수 있음.

정보시스템은 환자의 의약품 정보를 점검하고 중복·금기 의약품 등의 사용으로 인한 국민 건강상 위해를 방지하고자 마련된 것으로, 의약품을 처방·조제하기 전에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의약품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나, 일부 약사가 업무 부담 및 불편 등을 이유로 정보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,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관리에 사각지대가 되고 있음.

이에 약사가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할 경우 정보시스템을

통해 의약품정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여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을 효과적으로 방지해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(안 제23조의 2, 제98조).

또한 정보시스템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과거 투약 이력을 연계하여 의사 및 약사가 처방·조제 시 환자의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관리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제기되고 있음.

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정보시스템과 마약 류통합관리시스템의 연계 요청 시 이에 협조하게 함으로써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부작용 등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(안 제 23조의3).

##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약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항(종전의 제2항) 중 "제1항"을 "제1항 및 제2항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 제3항) 중 "제2항"을 "제2항에 따라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통한 마약류 의약품정보의 확인방법·절차, 제3항"으로 한다.

② 약사는 제23조제3항에 따라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마약,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환자에게 처방 또는 투여되고 있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통하여미리 확인하여야 한다.

제23조의3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6항(종전의 제5항) 중 "제4항에 따른"을 "제4항에 따른 시스템의 연계, 제5항에 따른"으로 한다.

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과 「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

의 정보(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및 같은 법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다. 이 경우 해당 정보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)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.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제98조제1항제3호의2를 제3호의3으로 하고,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의2. 제2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의약품정보를 확인하지 아니한 자

#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3조의2(의약품정보의 확인) ①	제23조의2(의약품정보의 확인) ①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② 약사는 제23조제3항에 따라
	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
	제2조제2호에 따른 마약, 같은
	조 제3호에 따른 향정신성의약
	품을 조제하는 경우 환자에게
	<u>처방 또는 투여되고 있는 마약</u>
	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23조
	의3제1항에 따른 의약품안전사
	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미리
	확인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약사는	③ 제1항 및 제2항
의약품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	
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	
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.	
③ 제1항에 따른 의약품정보의	$\underline{4}$ 제 $1$ 항에 따른 의약품정보의
확인방법・절차, 제2항에 따른	확인방법·절차, <u>제2항에 따라</u>
의약품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	<u>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</u>
정당한 사유 등은 보건복지부	통한 마약류 의약품정보의 확
령으로 정한다.	<u>인방법•절차, 제3항</u>

제23조의3(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 제23조의3(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 스템의 구축・운영 등) ① ~ ③ (생략) <신 설>

④ (생략)

⑤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・운영, 제2항에 따른 위 탁, 제4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템의 연계, 제5항에 따른----

스템의 구축·운영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
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식품의약 품안전처장에게 마약류 오남용 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 우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 과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 률」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정보 (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3조 에 따른 민감정보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다. 이 경우 해당 정보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) 연계를 요청 할 수 있다. 이 경우 식품의약 품안전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 ⑤ (현행 제4항과 같음)

(6) -----

-----제4항에 따른 시스

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제98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1. ~ 3. (생 략) <u><신 설></u>

 3의2.
 (생 략)

 4. ~ 11.
 (생 략)

 ② (생 략)

,
제98조(과태료) ①
<u>.</u>
1. ~ 3. (현행과 같음)
3의2. 제23조의2제2항을 위반하
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시
스템을 통하여 의약품정보를
확인하지 아니한 자
<u>3의3.</u> (현행 제3호의2와 같음)
 4. ~ 11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